

입회약정서

신규개서

경원개발(주)(이하“갑”이라한다.)와 입회자(이하“을”이하 한다.)는 “갑”의 해운대컨트리클럽(이하“클럽”이라한다.)의 회원으로“을”이 가입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입회약정서 2부를 작성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기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갑”은 골프장 및 골프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갑”의 운영방침이나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 가입에 따른 입회금 (이하“입회금” 이라한다.) 납입방법과 회원가입 후 “갑”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정물건)

약정물건은 “갑”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산6번지 일원의 해운대컨트리클럽 회원권 1매로 한다.

제3조 (약관의 발효)

당사자 쌍방이 회원모집 약정서에 기명, 날인한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

■ 제2장 입회금

제4조 (입회금)

1. 회원 입회금은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써 “을”은 입회금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입회금 지급방법

분양금액	계약금(월 일)	1차 중도금(월 일)	2차 중도금(월 일)	잔금(월 일)	총 납입금액

3. “을”은 “갑”에게 입회금 전액을 대금 완납일로부터 7년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7년이 지난 후 “을”의 탈퇴요구가 있을 경우 “갑”은 원금만 반환한다. 단, 입회금 반환으로 “갑”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일정 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제5조 (입회금 납입지연)

1. “갑”은 제4조에 정한 납입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농협은행 무담보 신용대출 이자에 준하는 연체료를 징구할 수 있다.

2. “을”이 입회 계약금만 납입한 후 1개월 이상 지체하고 제1항에 의한 연체료 납입을 거절할 경우 “갑”은 총 입회금액 10%의 위약금을 기 납기한 금액에서 공제한 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제6조 (제세공과금)

이 약정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제3장 회원

제7조 (회원자격의 획득)

1. “을”은 제4조에 의한 입회금 전액을 예치한 경우에 “갑”의 회원으로 자격을 부여받는다.

제8조 (정회원 수)

당 클럽의 정회원 수는 900명으로 한다.

제9조 (회원자격 제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단, 제1항 제1호, 제2항, 제5항 제외)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명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회원자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갑”의 운영방침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받고 1개월이 된 때
 - 회사가 정한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 “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내기도박, 지나친 음주 및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 경기보조원, 직원에 대한 희롱, 욕설, 폭행을 하였을 경우
- 입회금 및 기타 납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주소변경 또는 “갑”이 필요로 하는 회원 신상변경 등의 태만하였을 경우
- 회원권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무기명카드 및 무기명 쿠폰을 타인에게 금품을 받고 판매 및 알선하는 행위

제10조 (통지의 의무)

“을”은 계약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있거나 주민등록상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입회신청에 부정확한 연락처를 기입하거나, 계약 체결 후 변경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계약이행에 관한 “갑”이 “을”의 각종 통지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1조 (자격상실)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권의 양도
- 탈퇴
- 제명
- 사망
-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제12조 (회원권의 양도 등)

- “을”이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또는 상속할 경우, 법인은 그 이용자 변경이 있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갑”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당 클럽은 회원권의 양도, 양수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 지정회원, 가족회원의 명의를 변경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사항)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이용약관 및 회칙에 따르며 이외의 경우 “갑” 과 “을”의 협의로써 결정하되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갑”과 “을”이 협의되지 않은 사항 등의 쟁송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산6번지
경원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성 태

“을” (인)

입회약정서

신규

경원개발(주)(이하“갑”이라한다.)와 입회자(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의 해운대컨트리클럽(이하“클럽”이라한다.)의 회원으로“을”이 가입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입회약정서 2부를 작성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기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갑”은 골프장 및 골프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갑”의 운영방침이나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 가입에 따른 입회금 (이하“입회금”이라한다.) 납입방법과 회원가입 후 “갑”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정물건)

약정물건은 “갑”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산6번지 일원의 해운대컨트리클럽 회원권 1매로 한다.

제3조 (약관의 발효)

당사자 쌍방이 회원모집 약정서에 기명, 날인한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

제2장 입회금

제4조 (입회금)

- 회원 입회금은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써 “을”은 입회금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 입회금 지급방법

총 입회금액	계약금(월 일)	1차 중도금(월 일)	2차 중도금(월 일)	잔금(월 일)	총 납입금액

- “을”은 “갑”에게 입회금 전액을 대금 완납일로부터 7년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7년이 지난 후 “을”의 탈퇴요구가 있을 경우 “갑”은 원금만 반환한다. 단, 입회금 반환으로 “갑”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일정 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제5조 (입회금 납입지연)

- “갑”은 제4조에 정한 납입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농협은행 무담보 신용대출 이자에 준하는 연체료를 징구할 수 있다.
- “을”이 입회 계약금만 납입한 후 1개월 이상 지체하고 제1항에 의한 연체료 납입을 거절할 경우 “갑”은 총 입회금액 10%의 위약금을 기 납기한 금액에서 공제한 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제6조 (제세공과금)

이 약정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회원

제7조 (회원자격의 획득)

- “을”은 제4조에 의한 입회금 전액을 예치한 경우에 “갑”의 회원으로 자격을 부여받는다.

제8조 (정회원 수)

당 클럽의 정회원 수는 900명으로 한다.

제9조 (회원자격 제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단, 제1항 제1호, 제2항, 제5항 제외)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명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회원자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갑”의 운영방침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입료나 강제집행을 받고 1개월이 된 때
 - 회사가 정한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 “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내기도박, 지나친 음주 및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 경기보조원, 직원에 대한 희롱, 욕설, 폭행을 하였을 경우
- 입회금 및 기타 납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주소변경 또는 “갑”이 필요로 하는 회원 신상변경 등의 태만하였을 경우
- 회원권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무기명카드 및 무기명 쿠폰을 타인에게 금품을 받고 판매 및 알선하는 행위

제10조 (통지의 의무)

“을”은 계약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있거나 주민등록상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입회신청에 부정확한 연락처를 기입하거나, 계약 체결 후 변경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계약이행에 관한 “갑”이 “을”의 각종 통지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1조 (자격상실)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권의 양도
- 탈퇴
- 제명
- 사망
-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제12조 (회원권의 양도 등)

- “을”이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또는 상속할 경우, 법인은 그 이용자 변경이 있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갑”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당 클럽은 회원권의 양도, 양수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 지정회원, 가족회원의 명의를 변경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사항)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이용약관 및 회칙에 따르며 이외의 경우 “갑”과 “을”의 협의로써 결정하되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갑”과 “을”이 협의되지 않은 사항 등의 쟁송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산6번지
경원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성 태

“을” (인)

